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763호

「국가교통위원회 심의·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07조에 따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, 기 개정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추가(안 제2항)

나.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교통정책총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
- 팩스 : 044-201-557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(전화 044-201-3786, 37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